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17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정동만·김종양·김태호

이인선 · 강대식 · 박충권

강선영 · 이종배 · 박성민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 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 「노인복지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경로당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 의 경감이 필요한 경우
- 7. 그 밖에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전기 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노인복지법」 제37조의3제 1항에 따른 경로당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 항에 따른 장애인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감이 필요한 경우

		면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	
		<u>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u>제17조의2</u> (관계 기	관에 대한 협	제17조의3(관계 기관에 대한 협	
조 요청) (생 략)	조 요청) (현행 제17조의2와 같	
		흥)	